코로나19 관리지침 (인공신장실용)

(대한신장학회/대한투석협회, '24.08.26)

-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자 **코로나19 (COMD-19) 관리지침(인공신장실용)**을 마련함
- ※ 향후 발생 상황과 관련 연구결과 등에 따라 사례정의,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은 변경 가능함
- 1. 대상 : 혈액투석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

2. 목적

- 1)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로 하향되고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이 폐지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으나,
- 2)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콩팥병 환자는 주 2-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므로 '자가격리'에 제약이 따르고, 투석 환자들은 밀접한 공간에서의 투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감염병 확산이 쉽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 3) 일상회복 속에서 투석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침을 활용하고자 함

3. 사례 정의

- 1) 환자: 코로나19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자
- 2) 의사환자
 - · 의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검체 (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검체 (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항원 검출

4. 인공신장실 준비 사항

- 1)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에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치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하도록 교육한다.
- 2) 손소독제를 인공신장실 입구에 비치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 3) 비말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신장실 환경을 준비한다.
- 4) 대기실에서의 환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인공신장실 내 취식을 금한다.
- 5) 철저한 예약제를 시행하고 시간을 준수하도록 환자에게 교육한다. 예약 시 감염이 의심된다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말고, 자가진단검사(RAT)를 시행하도록 한다. 증상이 있고 자가진단검사(RAT) 결과 '양성'인 경우, 의료기관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한다.
- 6) 인공신장실에 들어오기 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안내한다.
- 7)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실한다.
- 8)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나 방문객을 통제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한다.

5. 사례 관리

1)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는 격리병실 또는 격리 투석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환기가 유지되는 경우 기존

투석시행 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

2)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입원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며,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병실에 입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투석 환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조절되지 않는 고칼륨혈증(K >6.0) 이나 대사성산증(pH <7.2 또는 total CO₂ <10)
- 면역억제제 투여 중이거나 항암치료 중인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판단하에 입원이 필요한 자 (요독증상, 영양실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또는 당뇨)
- 3) 60세 이상, 기저질환 동반자에서는 초기 치료제(렘데시비르 또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4) 혈액투석을 위해 투석기관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동한다.
- 5) 사례 해당자의 투석 시행 시 첫 투석 전 증상 발현 여부 및 시기, 격리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한다.
- 6) 외래 투석 환자는 매일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 증상을 검토하여 입원 우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 7) 의료진은 사례 해당자를 진료할 때 개인보호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장갑, KF94 또는 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한다.
- 8) 환자 접촉 전·후, 개인보호구 탈의 후 손 위생을 준수한다.
- 9) 투석장비는 사용 후 제조사의 권고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 10) 투석 시행 후 절차에 따라 청소·소독하고 소독 후 최소 1시간 환기(시간당 6회 환기 기준)한다.

- 11) 혈액투석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의료기관 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하여 처리한다.
- 12) 격리해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사례 해당자로 외래에서 투석하는 경우, 격리 해제시점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로 한다.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13) 격리해제 후에는 다른 환자와 같이 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 격리해제 시점에서 PCR 음성 확인은 불필요하다.

※ 참고사항

·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2024.8.16.)